



국 토 교 통 부



수신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단열관련 증빙서류 제출 방법 등) 회신

1. 경기도 건축디자인과-9945(2021. 5. 14.)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 (1)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적정 단열재 사용 증빙자료(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 또는 건축사의 확인에 따라 적정 단열재 사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결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기준 동조제1호에 따라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제6조제1호 라목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합니다.(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 \pm 5^{\circ}\text{C}$ 로 함)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단열재 시공에 대하여 상기 설계기준과 관련한 설계도서 및 서류 등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필요한 서류 등은 허가권자에 판단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직원 서유준 주무관 허성현 행정사무관 2021. 5. 24. 오한영

협조자

시행 녹색건축과-2437 (2021. 5. 24.) 접수 건축디자인과-10571 (2021. 5. 24.)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 / http://www.molit.go.kr
부 녹색건축과 418호

전화번호 044-201-4090 팩스번호 044-201-5574 / seo0112@molit.go.kr / 비공개(6)

청렴한 공직사회, 행복한 국민생활